



세법개론

VISUAL TAXLAW

임상엽 · 정정운

◆ 발행일 : 2024년 4월 5일

◆ 이 추록이 필요한 책 :

- [세법개론1] (임상엽·정정운) 30판 1쇄
- [세법개론2] (임상엽·정정운) 30판 1쇄

◆ 주요 내용 : 세법 추가 개정 및 오류수정사항

-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(2024.3.22. 개정)
-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(2024.3.22. 개정)
-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(2024.3.22. 개정)
-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(2024.3.22. 개정)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(2024.3.22. 개정)
-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 (2024.3.15. 개정)
- 「국세징수법 기본통칙」 (2024.3.15. 개정)
- 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」 (2024.3.15. 개정)



일러두기

1. 이 자료는 2024.3.1.에 출간된 세법개론 ①·② 제30판 제1쇄에 대한 추록입니다.
2. 이 자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
 -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
3. 이 자료에 반영된 일부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2024.3.22. 개정
 -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2024.3.22. 개정
 -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2024.3.22. 개정
 -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2024.3.22. 개정
 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2024.3.22. 개정
 -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 2024.3.15. 개정
 - 「국세징수법 기본통칙」 2024.3.15. 개정
 - 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」 2024.3.15. 개정
4. 이 자료는 위 3.의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세법개론 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 끝으로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(健勝)을 기원합니다.

— 임상엽&정정은 共著 —

I. 세법개론 1

1. 오류수정사항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265	下 9~7	(3) ① 소각당시 시가가 ... 주식가액(무상 주 의제배당, p.247 참조)	(삭제) ^(*주)
	下 6	(4) 법인이 ...	(3) 법인이 ...
295	上 3	2023년 3월 #일	2024년 2월 29일
305	下 5	‘업무추진비(接待費)’란 ...	‘업무추진비(業務推進費)’란 ...

(*주) 삭제하는 이유 : 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②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. 따라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법이론에 부합한 데 2024.2.29.에 개정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에서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삭제한 것입니다. 추후에 입법적 보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2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(1)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인상 조정

종전	개정
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: 연간 2.9%	: 연간 3.5%

<개정이유> 최근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간 2.9%에서 연간 3.5%로 인상 조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🔗 p.136 上 3~4행, 아래 내용으로 교체

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(이하 ‘**기본이자율**’이라 한다. 2023.3.20. 이후 기간분은 연 2.9%, 2024.3.22. 이후 기간분은 연 3.5%)로 한다(국기법 52 ①, 국기령 43의3 ②, 국기칙 19의3). 다만, ① 납세자

(2)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상 조정

종전	개정
☐ 정기예금이자율 : 연간 2.9%	: 연간 3.5%

<개정이유> 최근 정기에금이자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을 연간 2.9%에서 연간 3.5%로 인상 조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☛ p.229 上 7~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이자율(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**연간 3.5%**)을 말한다(법인칙 6).

(3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

☛ p.289 上 9~1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⑥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제24조 ②,④)」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서는 ‘사용자로부터 급여를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는데(②p.462 주석 참조),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.

(4)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

종전	개정
□ 소비성서비스업 중 ‘그 밖에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(조특령)’	□ 세부범위를 조특칙에서 구체화
(신 설)	① 무도장 운영업 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「관광진흥법(제5조)」 또는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1조)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) ③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④ 마사지업

<개정이유>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의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☛ p.319 下 2~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- ③ ㉠ 무도장 운영업, 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관광진흥법 또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), ㉢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, ㉣ 마사지업(조특직 17)

(5)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보완

종전	개정
☐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○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·출자자(출자임원 제외) : 배당 ② 임원·직원 : 상여 ③ 그 외의 자는 기타사외유출	☐ 소득처분 보완 ○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] (종전과 같음)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 ④ 그 외의 자 : 기타소득

<개정이유>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동일하게 귀속자가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, ④ 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보완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

☛ p.321 下 3~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**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① 주주·출자자(출자임원 제외)는 배당, ② 임원·직원은 상여,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기타사외유출, ④ 그 외의 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(법기통 67-106...6).

☛ p.331 上 4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- 비지정기부금 : 손금불산입(귀속자에 따라 배당·상여·기타사외유출·기타소득으로 처분)

(6) 금형(金型)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변경

종전	개정
☐ 건축물 등 기준내용연수 <별표 5> ○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 : 5년 ○ 선박 및 항공기 : 12년 ○ 건물과 구축물 : 20년, 40년	☐ 금형에 대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○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, 금형* 및 비품 : 5년 * 종전에 금형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(4년~20년) 적용] (종전과 같음)

<개정이유> 종전에는 금형(金型)에 대해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(4년~20년) 및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였으나, 각 업종의 금형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업종과 상관없이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과 동일하게 ‘기준내용연수(내용연수 범위) : 5년(4년~6년)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🔗 p.449 上 1~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- ① 차량 및 운반구(운수업,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), 공구, 기구, 금형 및 비품

🔗 p.449 上 7~9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- ③ 건물*과 구축물
*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<별표 6>을 적용할 수 있다.

(7) 「법인세법 기본통칙」 개정으로 인한 조문번호 이동

🔗 p.596 上 1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… 세무조정을 한다(법기통 15-11…12 ①).

(8) 「국세징수법 기본통칙」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

🔗 p.876 上 16~1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여기서 ‘송달지연’이란 국가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현실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(국기통 17-0…1).

🔗 p.878 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…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(국징통 20-0…1).

(9) 개정 세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157	下 13	2024년 3월 #일	2024년 2월 29일
173	上 16		
225	下 1		
250	上 6		
285	下 1		
286	上 4		
295	上 3		
382	上 8		
408	上 4		
520	上 6		
890	上 15		

II. 세법개론 2

1. 오류수정사항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20	下 8	p.116 <u>개정사항</u> 참조)	p.116 참조)
29	上 17	크사업자의	사업자의
341	下 11	해당하는 주식	해당하는 <u>기업의</u> 주식
670	下 1	발급하 경우	발급하는 경우
832	上 4	+ 15억원을 초과하는	+ 5억원을 초과하는

2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(1) 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」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

🔹 p.46 上 1~2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(*주1) 물·흙·퇴비 등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(부기통 2-2-1). 그러나 수표·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, 유가증권 및 상품권,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(부기통 4-0-3).

🔹 p.46 下 5행. 아래 내용 추가

⑥ 재화·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

(2)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에금이자율 인상 조정

종전	개정
□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 : 연간 2.9%	: 연간 3.5%

<개정이유> 최근 정기에금이자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을 연 2.9%에서 연 3.5%로 인상 조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🔄 p.133 上 11~12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(2024.3.2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3.5%)을 말한다(부가칙 47).

(3)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 필요경비 산입

종전	개정
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○ (감가상각) 5년 정액법 - (연간 산입한도) 800만원 - (한도초과분)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 ○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 필요경비 산입	□ 폐업시 잔여 비용 처리규정 보완 } (종전과 같음) ○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비용 전액 필요경비 산입

<개정이유>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🔄 p.391 下 9~8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위 규정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(소득칙 42 ⑦).

🔹 p.392 上 5~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위 규정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(소득칙 42 ⑦).

(4)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에금이자율 인상 조정

종전	개정
□ 정기에금이자율 : 연간 2.9%	: 연간 3.5%

<개정이유> 최근 정기에금이자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을 연간 2.9%에서 연간 3.5%로 인상 조정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🔹 p.394 上 3~4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이자율(2024.3.22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3.5%)을 말한다(소득칙 23 ①).

(5)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

🔹 p.462 上 10~1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제24조 ②,④)」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*(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)

* 구체적으로 위 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.⁵⁾

🔹 p.462 주석 5) 1~5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5) ‘근로시간 면제자’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.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제24조 ①,②,④)」).

(6) 30세 미만 미혼자인 경우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

🕒 p.702 上 15~19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③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중 사업소득·근로소득·기타소득(저작권 등 사용료, 문예창작소득, 강연료 등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말한다) 및 그 밖에 계속적·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(이들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, 사업소득·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)을 합한 금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2조 (Ⅱ))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. 2024년 1인 가구 월 2,228,445원)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%(월 89만원) 이상이고,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·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, 미성년자의 결혼,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(7) 2023년 귀속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율 조정

🕒 p.896 上 18~2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(*주2) ‘소득세율(14%~45%)’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(상증칙 10의3 ①).

초과배당금액		소득세율
5,760만원 이하		초과배당금액×14%
5,760만원 초과	8,800만원 이하	8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5,760만원)×24%
8,800만원 초과	1억5,000만원 이하	1,53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8,800만원)×35%
1억5,000만원 초과	3억원 이하	3,7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1억5,000만원)×38%
3억원 초과	5억원 이하	9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3억원)×40%
5억원 초과	10억원 이하	1억7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5억원)×42%
10억원 초과		3억8,406만원 + (초과배당금액 - 10억원)×45%

(8) 개정 세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시행일 확정

P	행	종전의 내용	고침
26	上 5(2곳)	2024년 <u>3월 #일</u>	2024년 <u>2월 29일</u>
95	下 6		
96	下 7		
99	下 10		
152	上 15		
161	下 1		
162	上 11		
166	上 15		
229	下 9		
380	上 14		
	上 18		
431	上 14		
433	上 2		
	上 20		
434	上 18		
547	上 3		
570	上 1		
586	下 6		
587	上 5		
596	上 17(2곳)		
673	上 11		
703	上 1		
710	上 8(2곳)		
711	上 2		
756	上 5		
	上 9		
935	上 7(2곳)		